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5. 12.

제안자 : 정무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	발의일	심사경과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415	황운하의원	2024. 7. 31.	제418회(정기회) 제7차 정무위원회(2024. 11. 1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 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부
	2210795	이헌승의원	2025. 6. 13.	제428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25. 8. 2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 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부
	2211726	박덕흠의원	2025. 7. 25.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 11. 24.)
	2210762	이해민의원	2025. 6. 12.	제428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25. 8. 2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 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부
	2210936	최민희의원	2025. 6. 19.	제428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25. 8. 2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 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부

	2211381	인요한의원	2025. 7. 9.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 11. 24.)
	2211555	민병덕의원	2025. 7. 18.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 11. 24.)
	2212868	김현의원	2025. 9. 10.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 11. 24.)
	2214628	권향엽의원	2025. 11. 27.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 12. 15.)
	2213411	이훈기의원	2025. 10. 1.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 12. 15.)
	2212857	이훈기의원	2025. 9. 10.	제429회(임시회) 제10차 정무위원회(2025. 11. 2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 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부
	2214750	김승원의원	2025. 12. 1.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 12. 15.)
	2215042	박범계의원	2025. 12. 9.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 12. 15.)
	2215056	김상훈의원	2025. 12. 10.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 12. 15.)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12. 15.)에서
 이상 1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25. 12. 17.)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1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SK텔레콤, 롯데카드, 쿠팡 등 주요 통신사, 금융사, 플랫폼 사업자 등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럼에도 일부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를 비용으로만 인식하여 개인정보 보호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 및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마련하여 현행 제재수단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화하는 한편 정보주체인 국민들이 권리 보호 및 피해 구제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유출 가능성 통지 도입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 명확화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강화(안 제30조의3 신설 및 제31조)

사업주 또는 대표자를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최종 책임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인력관리 및 예산확보 등 역할을 강화함.

나. 개인정보 보호 인증 의무화(안 제32조의2)

매출액, 개인정보 처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관리 체계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제고함.

다. 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 및 통지 항목 확대 등(안 제34조)

기존 통지 대상이던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 뿐만 아니라 위조·변조·훼손까지 통지 범위를 확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통지 의무를 부여함.

라.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과징금 강화(안 제64조의2제2항 신설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년 이내 반복적 위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천만명 이상 대규모 피해 발생,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유출이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의 투자 및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하도록 하여 기업의 사전적 예방투자를 유도함.

4. 부대의견

보호위원회는 과징금을 강화한 개정안의 취지에 맞추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징수한 과징금 수입을 실제 피해자 구제 및 지원 등에 활용하는 기금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7 중 “제34조제1항”을 “제34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주 또는 대표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에 관한 최종책임자로서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충분한 예산의 지원 등 총괄적인 관리 조치를 실효성 있게 하여야 한다.

제31조제1항 본문 중 “처리에”를 “처리 및 보호에”로, “책임질”을 “담당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임면시 이사회 의결
2.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신고

제31조제4항(종전의 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

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및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3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3항에 따른 업무 및 제6항”을 “제3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업무 및 제7항”으로 한다.

2.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인력 관리 및 예산 확보

3. 대표자 및 이사회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현황 및 주요 사항의 보고

제31조의2제1항제1호 중 “제31조제3항제3호”를 “제31조제4항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4조제1항 및 제3항”을 “제3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32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매출액,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분실·도난·유출”을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정보”를 “구체적 정보”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경우”를 “경우 해당 개인정보의 회수·삭제 등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포함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제2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6. 제39조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및 제43조에 따른 분쟁조정 등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법적 권리와 그 행사방법 등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유형,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과 유출등의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출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64조의2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6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7항) 전단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중전의 제8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제7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중전의 제9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1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이 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3년 이내에 제1항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각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고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가 1천만명 이상인 경우

3.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⑥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의 투자 및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5조제2항에 제14호의2부터 제14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제15호의2로 하며,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제34조제1항”을 “제34조제1항·제2항”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할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8호 중 “제34조제3항”을 “제34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9호를 삭제한다.

14의2. 제31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제31조제10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14의3. 제31조제3항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임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

14의4. 제31조제3항제2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5. 제32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2 및 제75조제2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관한 적용례) ① 제34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출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출등이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① 제6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료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64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64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의7(적용범위)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처리된 가명 정보는 제20조, 제20조의2, 제27조, <u>제34조제1항</u> ,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및 제37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u><신 설></u>	제28조의7(적용범위) ----- ----- ----- ----- <u>제34조제1항 · 제2항</u> ---- ----- -----.
	<u>제30조의3(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 주 또는 대표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정보주체의 권 리 보호에 관한 최종책임자로 서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전문 성을 갖춘 인력과 충분한 예산 의 지원 등 총괄적인 관리 조 치를 실효성 있게 하여야 한 다.</u>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u>처리</u> 에 관한 업무 를 총괄해서 <u>책임질</u>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 다. 다만, 종업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 ----- ----- <u>처리 및 보호</u> 에 ---- ----- <u>담당할</u> ----- ----- -----.

의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생략)

<신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략)

<신설>

<신설>

2. ~ 7. (생략)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

② (현행과 같음)

③ 매출액,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임면시 이사회 의결

2.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신고

④ -----
-----.

1. (현행과 같음)

2.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인력 관리 및 예산 확보

3. 대표자 및 이사회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현황 및 주요 사항의 보고

4. ~ 9. (현행 제2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⑤ ----- 제4
항 -----

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⑤ (생략)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⑦ (생략)

⑧ 보호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⑨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제3항에 따른 업무 및 제6항에 따른 독립성 보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⑦ -----
----- 제4항 -----

-----.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⑨ ----- 제8항 -----

-----.

⑩ -----
----- 제3항
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업무 및 제7항-----

-----.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대리인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u>제31조제3항제3호</u>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업무 2. <u>제34조제1항 및 제3항</u>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3. (생략) ② ~ ⑤ (생략) 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와 관련한 일련의 조치가 이 법에 부합하는지 등에 관하여 인증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① ----- ----- ----- ----- ----- ----- ----- ----- -----. 1. <u>제31조제4항제5호</u>----- ----- ----- 2. <u>제3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u>-----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 ① ----- ----- ----- ----- ----- ----- -----. <u>다만, 매출액,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u>
---	---

<신 설>

6. 제39조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
배상의 청구 및 제43조에 따
른 분쟁조정 등 피해를 입은

<신 설>

<신 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른 유출등의 통지 및 제3항에 따른 유출등의 신고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생

정보주체의 법적 권리와 그 행사방법 등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유형,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과 유출등의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출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
----- 경우 해당 개인정보의 회수·삭제 등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포함하여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제2항-----
-- 제4항-----

--.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현

략)

<신 설>

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이 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3년 이내에 제1항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각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고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가 1천만명 이상인 경우

3.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u>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 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u>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전 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 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 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 정한다.	③ ----- 제1항 및 제2 항----- ----- ----- -----.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개 인정보처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 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 보처리자의 전체 매출액을 기 준으로 산정하되 해당 개인정 보처리자 및 비슷한 규모의 개 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유 규모,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상품·용역의 가격 등 영업현 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④ ----- 제1항 및 제2 항----- ----- ----- ----- ----- ----- ----- ----- ----- ----- ----- -----.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⑤ ----- 제1항 및 제2 항-----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비례성과
침해 예방에 대한 효과성이 확
보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 11. (생략)

<신설>

⑤ (생략)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2
항부터 제5항까지를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
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
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
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
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1. ~ 11. (현행과 같음)

⑥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
호를 위한 예산·인력·설비·
장치 등의 투자 및 운영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한
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의 고
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
위를 한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⑧ 제1항 및 제2항----- 제3
항부터 제7항까지-----

-----.

⑨ ----- 제1항 및 제2
항-----

-----.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⑧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독촉으로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과 제7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예에 따라 징수한다.

⑨ 보호위원회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⑩ 보호위원회는 제9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

⑩ ----- 제1항 및 제2항-----

-- 제9항-----

-----.

⑪ -----
----- 제1항 및 제2항--

-----.

⑫ ----- 제11항-----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
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
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
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
다.

제75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4. (생략)

<신설>

<신설>

<신설>

-----.

제7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14. (현행과 같음)

14의2. 제31조제1항(제26조제8
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제31조제10항에 따
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14의3. 제31조제3항제1호(제26
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
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임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

14의4. 제31조제3항제2호(제26
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

<신 설>

15. 제3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한 자

16. (생략)

17. 제34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18. 제34조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19. ~ 27. (생략)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

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5. 제32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15의2. (현행 제15호와 같음)

16. (현행과 같음)

17. 제34조제1항·제2항-----

---- 알려야 할 사항-----

18. 제34조제4항-----

-----.

19. ~ 2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8. (생략) 9. <u>제31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u> 9의2. ~ 12. (생략) ⑤ (생략)	-----. 1. ~ 8. (현행과 같음) <u><삭제></u> 9의2. ~ 12. (생략) ⑤ (현행과 같음)
--	---